

## I. 서 론

- 국민소득증대에 따라 축산물등 식품의 소비형태가 양위주에서 질위주로 점차 전환되면서 우리 소비자들은 보다 위생적인 식육, 계란, 우유를 공급 받고자 희망하고 있는 추세임.
  - 아울러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축산물등 식품의 국제간 무역 시 식품위생 및 검역규정(SPS협정)을 준수하도록 함에 따라 국내산 축산물(육류)도 수입육류와 동일한 검사방법과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 과 검사에 따른 명확성을 보장하여야 함.
- 이러한 국내·외적인 여건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우리수의사(축산물검사원)들의 축산물 검사에 대한 책무는 점차 그 중요성이 증가되어 가고 있으며,
  - 최근에는 그 중요성에 대한 문제가 입증되고 있는데 그 단적인 예로 “호주산 쇠고기에서의 클로트플루어주론 검출건” 쇠고기에서 탄저병 원인균이 검출되었다는 언론의 보도 “우유에서의 항생제·합성화학제의 잔류 및 체세포 과다우유 관련보도”등이 있음.
- 따라서 금번 '95 가축위생학회 년말결산 세미나에 우리 축산물검사원 및 관계공무원등 취하고 있는 식육위생 관리실태 및 검사제도 현황과 문제점 등을 돌이켜 보고 앞으로 추진하고 개선해야할 내용등을 기술하여 위생적이고 깨끗한 육류를 생산·공급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외국산 육류 보다도 더 선호하는 식육생산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의미에서 본고를 쓰고자 함.

## II. 우리나라의 식육생산과 위생관리의 현주소

### 1. 우리나라의 식육생산 실태

- 우리나라의 식육생산량은 '94년도를 기준으로 쇠고기가 203천톤, 돼지고기가 854천톤, 닭고기가 246천톤으로 15년전 보다 쇠고기는 213%, 돼지고기는 214%, 닭고기는 273%가 증가하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94 세계의 쇠고기, 돼지고기 생산실태 우리나라와의 비교〉

		도축두수	도체중 (지육기준)	생산량	비고
쇠고기	세계	238,597천두	212kg/두	50,509천톤	
	한국	790	257	203	
	점유율	0.33%	121	0.40	
돼지고기	세계	1,013,161	78kg/두	78,954천톤	
	한국	10,600	81	854	
	점유율	1.05	103.9	1.08	

- 세계 식육생산량과 비교하여보면 우리나라 쇠고기 생산량은 전세계 생산량의 0.4% 수준이며, 돼지고기는 1.08%에 해당됨.
- 도체중은 소의 경우 세계평균이 지육기준으로 212kg/두이며, 우리나라는 다소 높은 257kg/두로 생체중량으로 환산시 459kg에 해당됨.  
- 돼지의 경우도 두당 지육기준으로 81kg으로서 세계 평균보다 높음.

## 2. 식육위생관리란

- ▣ 식육위생관리라 함은 생축의 생산, 운반, 도살, 처리, 가공, 유통, 판매, 소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의 관리를 말함.
  - 이 과정에서 생축이나 식육 자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문제, 즉 인수공통 전염병, 기생충, 유해물질 또는 병변부위등을 찾아서 제거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또한 도살처리, 유통, 판매과정에서의 오염을 방지하여 위생적인 식육상태, 육질의 향상 또는 보장을 위하여 일련의 문제를 관리하는 것임.

## 3. 식육위생관리의 중요성

- ▣ 유사 이래 인류가 식육을 섭취함으로써 각종 위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되었음.

- 그 위해의 내용을 보면 동물 자체의 질병으로부터 유래하는 직접적인 원인(1차적 위해)과 건강한 동물의 식육이었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미생물등의 오염에 의해서 발생하는 간접적인 원인(2차 위해)에 의한 것임.
- ▣ 1차적 위해는 식용으로 하는 동물의 전염성 질병으로서 그 전염병의 대부분은 감염발생등이 모두 사람과 공통성의 것으로서 사람에게 미치는 건강상의 위해는 매우 큰 것임.
  - 따라서 가축의 전염병 혹은 기생충병등 가축의 생산과정에 있어서의 질병의 발생은 식용으로 해도 되는가의 가치가 잘못되었을 때에 사람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를 가져오게 되는 것임.
- ▣ 또 2차적 위해로서는 식육의 생산, 저장, 소비라고 하는 식품유통시스템 중에서 그 관리의 불량에 의한 잘못인데 1차적으로는 합격품이었다라도 2차적 위해에 의해서 초래되는 결과는 전체적인 소비량을 생각할 때에 막대한 것임.
  - 이와같이 식육 및 가공품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강상의 위해는 단순한 것이 아니고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그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요구됨.
  - 따라서 식육이 가지는 본래의 영양학적 가치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식육의 생산과 소비가 대단히 필요함.
    - 사실은 식육뿐만 아니라 모든 식품에 있어서도 그 안전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생산과정에 있어서의 철저한 위생관리와 엄격한 검사체제가 기초가 되어야 함.

#### 4. 우리나라의 식육위생관리시설 및 도(계)축 실적

##### ▣ 도 축 장

- 우리나라의 도축장은 도축장 권역화를 통한 위생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도축장을 통·폐합한 결과 1977년도에 515개소에서 1995년 115개소로 개소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도축장시설의 현대화 추진을 통하여 개소수는 축소 될 것임.

〈우리나라 도축장 개소수의 변천과정 및 주요추진시책〉

년도별	도축장수	주요시책
1977. 11	515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축장 정비방안 시달</li> <li>-1시·군 1개소 이하로 정비</li> </ul>
1981. 2	315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축장 권역화 추진</li> <li>-관영도축장을 민영화 하여 근대화 유도</li> <li>-도축장 신규허가 불허</li> </ul>
1983. 3	220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의 도축권역을 65개소로 통폐합할 정비계획 수립</li> <li>-86아시안게임 및 88올림픽 대비</li> </ul>
1991. 5	171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축장 정비 및 현대화 방안 확정 시달</li> <li>-관영도축장 폐쇄유도</li> <li>-정비대상 도축장 등급격상 억제 및 허가기간 연장억제</li> <li>-현대식 도축, 가공시설과 판매조직을 갖춘 대형유통업체의 신규참여시 허가</li> </ul>
1992. 10	165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91도축장 시설근대화 및 식육유통센터 설치 자금지원</li> <li>-5개소 25억(축산진흥기금)</li> <li>○축산물 위생처리법 시행규칙 개정</li> <li>-도축장 위생시설 기준 강화</li> <li>-도축장 등급조정(3등급 → 2등급)</li> <li>○'92 도축장 시설근대화 및 식육유통센터 설치 자금지원</li> <li>-10개소 50억(축산진흥기금)</li> </ul>
1993. 6	161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축장 정비 행정규제 완화</li> <li>-민영도축 통폐합 자율화</li> <li>-관영도축장 폐쇄 유도(시·도지사가 필요시 민영화)</li> <li>-1권역 1업체 시설근대화 자금지원(65권역)</li> <li>○'93 도축장 시설근대화 및 식육유통센터 설치자금 지원</li> <li>-18개소 126억원</li> </ul>
1995현재	115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축장 65개소, 간이도축장 50개소</li> </ul>

○도축장의 세부 설치실태

- '95년 1월 현재 우리나라의 도축장 설치실태는 총 115개소로 시장·군수가 운영하는 도축장이 18개소, 축협에서 운영하는 도축장이 11개소, 민간업자가 86개소로 운영하고 있음.
- 도축장이 제일 많은 도는 경기도로 20개소(도축장 10개소, 간이도축장 10개소)이며, 그 다음이 경북 14개소(도축장 7개소, 간이도축장 7개소)이고, 강원(13개소), 경남(13개소), 충남, 전북, 전남은 각각 12개소로 설치 운영중에 있는 실정임.

	등 급 별			운 영 권 자 별			
	계	도 축 장	간이도축장	계	관 영	축 협	민 영
개 소 수	115	65	50	115	18	11	86

○도축장의 가동율은 '93년을 기준으로 볼 때

- 1개소당 도축능력은 소 1일평균 63두, 돼지 353두로 실제 도축실적은 1일평균 소 14두, 돼지 202두를 도축하고 있어 가동율은 소 23%, 돼지 57% 수준임.

■ 도 계 장

- '95. 1월 현재 우리나라의 도계장은 64개소이며, 세부 내역별로 보면 도계장이 55개소, 간이도계장이 9개소임.

	계	도 계 장	간이도계장	비 고
개 소 수	64	55	9	

- 우리나라 도계장은 78개소('93년기준)로 1일 도계능력은 2,138천수를 감안하여 계산하면 개소당 평균 약26천수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 도계수수는 1일평균 4,500수 정도로 가동율은 16% 수준에 머물고 있음.

〈'92~'93년간 도계장 도계능력 및 1일평균 도계수수〉

도계장개소	도계능력	전 체 도 계 실 적		도계수수	가능율
		'92	'93		
78(1개소)	2,138천수/일	90,974천수/년	103,007천수/년	4,459수/일	16%

※ ( )내는 오리전문 도계장임.

### Ⅲ. 식육의 안전성 확보와 외국의 관리실태

#### 1. 축산식품의 생산과 안전성 확보의 저해요인

▣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는 식용동물(food animal)의 사육단계에서부터 시작하여 도축, 가공처리 및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소비할 때 까지의 모든 통한 위생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WTO의 식품위생의 정의)

○ 축, 사료위생, 사육위생, 도축(도계)위생, 축산물 가공위생, 축산물 유통(저장)위생 및 조리, 섭취단계의 위생관리에 이르기까지의 안전성 확보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HACCP제도) 참고로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단계별 위해요인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음.

	사 료 위 생	사 육 위 생	도축·가공·유통위생
대 상	목 조 · 건 조 원 료 사 료 배 합 사 료 음 용 수	육 우 · 유 우 돼 지 육 계 산 란 계	도축·도계처리 식육·육가공품 유·유제품 난·난가공품
생물학적요인	곰팡이독소 병원미생물 부패미생물	해충 기생충 위생동물	오염지표미생물 병원미생물 환경유래부패세균
미생물학적 요 인	농 약 사 료 첨 가 물 동물용외약품 환경오염물질	살충제 살서제 살균제 세정제	식품첨가물 용기·포장유래물질 유기독성물질

## 2. 외국과 한국의 안전성 확보 관리기관 및 실태

구 분	한 국	일 본	미 국
관리체계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및 지소(49개소) 소속 하에 도축장 파견근무 형태임(통제기능 미약 함)	지방보건소의 위생과 및 식육위생검사소(82개소) 소속하에 전문 적으로 관리함(대·소 규모 구분 관리함)	FSIS의 중앙통제하에 5 개 권역 26지역 감사소 및 188개 지방순회 검사 관실설치 관리함(통제 기 능이 체계적임)
관리현황	도축장 : 115개소 도계장 : 64 점유량 : 83 검사원 : 374명 (수의사) 자체검사원 : 60명 (도계장) 보조원 : 없음	도축장 : 365개소 도계장 : 1,970 검사원 : 2,300명 (수의사) 자율검사원 : 연간 30만수 이하 시설(도계장) 보조원 : 없음	도축장 : 2,814개소 도계장 : 531 도축·계장 : 3,378 계 : 6,723명 검사원 : 7,732 (수의사 1,200) 보조원 : 6,500명
법규제	극히 기본적 규제만 있음. - 축산물위생처리법 (단일법으로 묶여있음) - 식품위생법	필요한 내용은 다 규 제되어 있음. - 도축장법 - 식조처리법 - 식품위생법	구체적이고 세부적으 로 규제되어 있음. - 식육검사법 - 계육산물검사법 - FD & C법
검사시설 및 방법	일괄작업 및 검사시설 미비함. 사전·사후 검사가 형 식적이며 시험실 검사 는 전무 상태임.	일부시설 미비함. 사전·사후 검사가 충 실하며, 필요시 시험 실 검사 실시함.	거의 완비된 상태임. 사전·사후 검사 철저 하여 계획적인 시험실 검사 실시함.
검사원 훈련	전문교육과정 없음. 일부 교육이 있으나 기간이 부족하고 실제 적이 못됨.	전문교육기관은 없으 나 도축검사 기술강습 회가 정기적으로 개최 됨.	전문교육기관(Texas A & M)이 있으며 신규채용자 교육 및 정기적인 보수교육이 있음.

#### IV. 식육위생관리를 위한 시책방향

##### 1. 도축장 시설현대화 추진

- ▣ 위생적인 육류생산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식육을 생산하는 시설이 개선되어야 함.
  - 육류생산 시설인 도축장의 시설현대화를 위하여 그간 추진한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음.
  - 그간 도축장 현대화 추진실적으로

	'91		'92		'93		'94		합 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시설근대화	4개소	20억원	8	40	12	84	9	63	33	207
식육유통센터	1	5	2	10	6	42	11	77	20	134
계	5	25	10	50	18	126	20	140	153	341

- ※ '95년도 추진중인 것은 도축장 시설근대화 7개소, 식육유통센터 3개소임.
  -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 '94년도 축산물위생처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98. 1. 1일까지 간 이도축장은 도축장의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을 경우는 자동적으로 폐쇄가 되도록 되어 있음.
    - 우리나라의 2000년도 도축물량을 돼지를 기준으로 추정한 도축장의 개소수를 산정하면 63개소이면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면 55개소로 추정됨.

- ▣ '94년도를 기준으로한 도축장 시설현대화 시·도별 추진실적으로는 160개소에서 115개소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91이전	3	2	1	1	2	2	27	18	7	16	13	23	25	18	2	160
'95이후	3	2	1	1	2	2	20	13	7	12	12	12	14	13	1	115

- ▣ 앞으로는 정부에서는 도축장에 대한 지원이 없고 업계자율적으로 추진키로 함.



## 2. 도계장 시설현대화 지속 추진

▣ 그간 도계장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추진한 사항으로 35개소에 31,609백만 원을 지원한 바 있음.

(단위 : 개소, 백만원)

	'89	'90	'91	'92	'93	'94	'95	계
○사 업 량	4	6	3	3	5	7	7	35
○지 원 금 액	1,000	3,250	3,000	3,000	5,000	6,647	9,172	36,609

○노계전문(병행) 처리시설의 지원으로는 4개소의 9,300백만원임.

	'91	'92	'93	'94	계
○사 업 량	2개소	1	-	1	4
○지 원 금 액	4,000	2,000	-	3,300	9,300

### ▣ 도축·도계부산물 처리시설

○도축 및 도계부산물의 사료화를 위한 처리시설로서 92년부터 자금을 지원하여 총29개(개별처리시설 23개소, 공동처리시설 6개소)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 함.

	'92		'93		'94		'95	
	개 별	공 동	개 별	공 동	개 별	공 동	개 별	공 동
○사 업 량	3	2	2	2	8	1	9	1
○지 원 금	1,800	4,000	860	4,000	4,786	2,258	3,875	2,100

▣ 앞으로는 '96년도에 도계장 3개소, 도축·도계부산물 처리시설 지원 6개소를 지원한 후 '97년도 부터는 업계 자율적으로 시설현대화를 추진하도록 할 계획임.

### 3. 도축 및 유해잔류물질 검사장비등의 지원예산

- ▣ 그간 당부에서는 도축 및 유해잔류물질 검사장비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한바 있으나, '95년부터 WTO출범으로 수입축산물 및 국내산 육류에 대하여 SPS협정을 준수토록 함.

	'95		'96 예산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검 사 장 비	3종 18대	535백만원	7종 300대	2,475백만원
검 사 재 료 비	3종류	51	4종류	200
기 술 교 육	3회	40	3회	73

- 도축 및 유해잔류물질 검사를 위한 장비의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어 '95년도에 확보한 예산보다 훨씬 많은 2,457백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특히 검사재료비를 200백만원을 확보한 바 있음.
  - '96년도에는 동 재료비를 그간 유해잔류물질 검사실적(특히 돼지에 대한 검사를 충실히 한 시·도)에 따라 배정할 계획임.
- ▣ 아울러 축산물검사원 및 자체검사원에 대한 기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73백만원을 확보하였음.

### 4. 육류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

- ▣ 국내 육류위생수준 향상 대책추진 기본방향
  - 가축사양, 사료, 동물약품등 모든 종합적인 육류위생수준 향상대책 추진
    - 생산자 단체가 중심이 되어 양축가에 대한 계도·홍보 강화
    - 축사시설 현대화등 가축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질병발생 감축 유도
    - 종돈장·종계장, 사료, 동물약품등에 대한 분야별 대책 수립 추진
      - 종돈장·종계장의 방역위생 강화로 질병 청정화 농장 유도
      - 배합사료 관리 강화

- 검사체계 확립 및 제도·교육
  - 도축장 검사강화를 위한 검사체계 확립
  - 잔류물질 검출시 철저한 잔류원인 추적 및 경위 확인 및 계도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검사장비 보강 및 검사 기술교육
- 미비된 각종 관련제도 정비
  - 배합사료 검사내용 및 체계개선('96. 6. 30 이전)
  - 위생 및 방역 우수농장 정부인증제도 실시('96. 7. 1부터)
  -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기준 제정('95. 7. 31 이전)
  - 잔류물질조사 Program 개발 시행('96년부터 매년)
-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육류위생 수준향상 대책추진협의회』 구성 운영

#### ■ 세부 추진계획

- 사육관리개선
  - 종돈장
    - 종돈장의 가축질병 전파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
    - 종돈장은 주1회 이상 정기적인 소독 실시
    - 종돈장 입구의 소독시설 설치
    - 모든 돈사 출입구에 소독조 설치 운영
    - 입식 종돈에 대한 입식전 30일이상 격리 사육 및 질병검사 실시
    - 종돈장 출하 돼지에 대한 연2회이상 정밀검사 실시
  - 사육시설
    - 축 사
    - 환기시설, 위생적인 분뇨처리시설, 보온시설등 설치
    - 육성돈과 비육시설의 분리
    - 축사면적에 따른 적정사육두수 사육으로 과밀사육 방지
    - 소독시설 설치 강화

- 급여시설

- 기존시설의 시설개선 및 신규시설시에는 분리사육시설을 의무화
  - 자동급여·급수 시설을 사육단계별로 분리 설치
  - 질병전파 방지를 위한 축사 표준설계서 개발
  - 시설개선자금 지원시 상기시설 설치 의무화

- 사료첨가제 및 동물약품 남용규제

- 사 료

- 사료검사 강화

- 배합사료제품 포대에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준수(벌크는 휴대)
      - 예방제 및 치료제등의 첨가시 첨가물의 명칭과 함량, 사용목적등 기재 주의사항과 휴약기간등 명시

- 항생제등 동물약품 사용실적 점검

- ※ 위반시 사료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제조업자에  
게 과징금 부과(허가능력 톤당 10천원) 또는 영업정지

- 사료검사 제도개선

- 사료내 잔류농약 및 동물약품 검정을 연차적으로 실시
      - '97까지 농약 17종, 동물약품 62종 검정실시

- 동물용의약품

- 동물용의약품의 축산물내 잔류대책 제도개선

- 첨가제 : 배합사료 제조용 동물약품 첨가사용기준(고시) 보완('95. 6말)

- 치료제 :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제한 기준(고시제정) ('95. 7말)

- 동물약품별 사용대상동물, 용법·용량 및 휴약기간 규정

- ⇒ 출하제한 지시서 발급(수의사 또는 약사 → 양축가)

- 동물약사 감시 강화

- 배합사료 제조업소,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소 및 판매업소에 대한 동물약사 감시 강화 ⇒ 강력한 행정조치

- 올바른 동물용의약품 사용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 배합사료 제조업자,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자, 동물병원 개설자 및 양축농가
- 가축질병발생 감소를 위한 방역대책의 효율적 추진
  - 종돈장·종계장에 대한 위생검사 강화
    - 목적 : 종돈장·종계장의 질병 청정화 농장 유도
    - 주관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49개소)
    - 검색요원 교육 : 수의과학연구소  
혈청검사 및 미생물검사 기술교육 실시
    - 농장 표준방역 프로그램 개발 및 지도강화 : 수의과학연구소
  - 농장가의 질병차단 대책
    - 농장간 출입차량의 소독 의무화  
가축수송차, 사료수송차, 계란집하장, 도계장, 도축장, 출입차량 양계장의 1회용 종이난좌(계란운반용기) 사용
    - 가축매매시 중간상인들을 통한 질병전파 방지  
출입자에 대한 방역관리 철저
  - 위생 및 방역관리 우수농장에 대한 정부인증제도 추진
    - 대상 : 허가·등록된 종돈장의 종계장
    - 목적 : 종돈·종계장 인증제도를 시행하여 기존농장과 차별화, 브랜드화 방역관리 향상
    - 인증내용 : 농장의 위생 및 방역관리 실태  
소독·청결상태등 위생, 방역관리와 특정질병 발생 유무검사  
양돈장 : 돼지오제스키병, 생식기호흡기증후군, 위축성비염, 흉막폐염, 돼지적리 음  
양계장 : 추백리, 만성호흡기병, 전염성할막염, 닭티프스
    - 인증기관 : 농림수산부, 수의과학연구소  
검사실시 : 수의과학연구소, 시·도가축위생시험소  
정기확인검사 : 미생물분리 및 혈청검사

- 시행계획
  - '95. 12. 31일까지 관계기관·단체협의회 개최 등으로 방법 및 제도화
  - '96. 7. 1부터 시행
- 잔류물질 검사체제 정비
  - 국가 잔류물질조사프로그램(National Residuse Monitoring Program) 개발 시행
    - 주관 : 수의과학연구소
    - '96년부터 매년 모니터링 및 탐색조사 실시(연)
      - 항생물질, 설파제 및 농약등의 잔류에 대한 분포 및 유해성 분석으로 차년도 잔류물질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모니터링대상 축종별 검사대상물질 시료채취 및 수송요령, 물질별 검사방법, 검출한계등 포함.
      - '96년부터 프로그램에 따라 잔류조사 실시
  - 시험연구사업 추진
    - 주관 : 수의과학연구소
      - 축산물내 잔류물질 신속검출기법 개발 및 기술보급
      - 위해분석 및 주요관리기준(HACCP) 개발에 의한 생산현장의 위생 관리지침 적용에 관한 연구
      - 사료내 동물용의약품등 유해성물질 잔류검사기법 개발 연구 및 기술 보급
  - 연구용역 사업을 잔류물질 방지대책 연계 추진
    - 기시행중인 연구용역 사업을 잔류물질 방지대책에 맞추어 보완
    - 연구주관 : 대한수의사회
      - 축산식품에 대한 위생적 안전성 관리대책 개발
      - 기간 : '94~'96(3년)
      - 예산 : '94 현장애로 개술개발사업비 282백만원

## 5. 가축위생시험소법 제정 추진

▣ 농림수산부는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96년도에 가축위생시험소법(가칭)을 제정키로 하였음.

○ WTO/SPS 협정에 따라 국제방역(검역)과 국내방역을 연계하여 수입 축산물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와 병행한 국내산 축산물에 대하여도 검사를 강화하여야 하며, 검역이 완료된 수입동물에 대하여도 일정기간 특별관리를 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을 차단하여야 함.

—수입검역은 동물검역소에서 기술인력, 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철저히 수행하고 있으나 국내검사를 실시하는 시·도 가축위생시험소는 시설, 기술인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시·도간 격차가 심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 가축위생시험소법의 주요골자는

○ 시도에 가축위생시험소 또는 지소의 설치근거를 법률적으로 명시하고  
○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사업무, 병성감정 및 진단업무, 유해잔류물질 검사업무, 수외과학연구소와의 연락시험등 직무를 영문화하고,  
○ 가축위생시험소장(지소장)은 수의사면허 소지자로 임명토록 하였으며,  
○ 농림수산부의 지도·감독을 강화토록 하였음.

▣ 농림수산부는 동법이 제정·시행됨으로써

○ 가축방역, 축산물위생검사, 잔류물질검사등 업무량 증가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질병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보건 위해방지에 기여케 되고,  
○ 지방자치단체장을 구속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업무의 지도·감독으로 중앙의 행정지시가 일사불란하게 일선에서 임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으며,  
○ 아울러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으로 효율적이고 의욕적인 업무수행이 기대됨.